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37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조배숙 · 성일종 · 이인선
김미애 · 조정훈 · 서일준
나경원 · 임종득 · 유상범
곽규택 · 박수영 · 윤영석
이상희 의원(13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지만,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음.

이에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초기 임신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에 가장 안전한 기간이라고 알려진 10주 이내의 임신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예외적 낙태를 처벌

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

더불어 낙태 불처벌로 인하여 더욱 성행하고 있는 낙태 가용 및 유인, 권유 등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의 낙태만을 처벌하고,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촉탁·승낙 낙태죄의 처벌범위를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함(안 제269조).

나.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의사 등 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을 정비함(안 제270조).

다.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경우 여성의 임신의 유지·종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낙태 강요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낙태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27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9조제1항 중 “婦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을 “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이 약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婦女の 囑託 또는 承諾을 받아 落胎하게 한 者도”를 “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婦女를”을 “임신한 여성을”로 한다.

제270조제1항 중 “婦女の 囑託 또는 承諾을 받아 落胎하게 한 때에는”을 “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婦女の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을 “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婦女를”을 “임신한 여성을”로 한다.

제2편 제27장에 제2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0조의2(낙태강요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낙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9조 및 제270조의 행위를 유인·권유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69條(落胎) ①<u>婦女가 藥物 其他 方法으로 落胎한 때에는</u> 1年 以下の 懲役 또는 200萬 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 ②<u>婦女の 囑託 또는 承諾을 받아 落胎하게 한 者도</u> 第1項의 刑과 같다. ③第2項의 罪를 犯하여 婦女를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7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第270條(醫師 等の 落胎, 不同意落胎) ①醫師, 韓醫師, 助産師, 藥劑師 또는 藥種商이 <u>婦女の 囑託 또는 承諾을 받아 落胎하게 한 때에는</u> 2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②<u>婦女の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하게 한 者는</u> 3年 以下の 懲役に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犯하여 <u>婦女를 傷害에 이르게</u>	第269條(落胎) ①<u>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이 약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u> -----. ②<u>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u>-----. ③-----<u>임신한 여성을</u>-----. 第270條(醫師 等の 落胎, 不同意落胎) ①-----<u>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u>-----. ②<u>임신 10주 이상인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u>-----. ③-----<u>임신한 여성을</u>-----

게 한때에는 5年 以下の 懲
役に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때에는 10年 以下の 懲役
에 處한다.

④ (생 략)

<신 설>

-----.

-----.

④ (현행과 같음)

제270조의2(낙태강요 등) ① 폭
행 또는 협박으로 낙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9조 및 제270조의 행
위를 유인·권유한 자에 대
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